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20095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황운하 · 황 희
차규근 · 윤종오 · 송옥주
임오경 · 오세희 · 신장식
이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, 전수교육,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, 국가유산청장 및 시·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·작성·유지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·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,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·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무형유산의 기록·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·시행과 기술의 개발·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·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

는 것임(안 제2조제13호 · 제7조제1항제4호의2 · 제48조의2 신설).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”이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의 보전·관리·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·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)

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
2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표준화
3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분석·가공

4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
 5. 그 밖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·관리·전승·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“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”이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의 보전·관리·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·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.
제7조(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	제7조(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·6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
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8조의2(무형유산지능정보화
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
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
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
용기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
할 수 있다.

1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
지능 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
급

2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
지능 활용기술의 표준화

3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
지능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
자료의 수집·분석·가공

4.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
지능 활용기술의 관리 및 활
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·
운영

5. 그 밖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

	<u>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</u> <u>· 관리 · 전승 · 활용 등에 필</u> <u>요한 사항</u> ② <u>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</u> <u>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</u> <u>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무</u> <u>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</u> <u>활용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</u> <u>지원할 수 있다.</u>
--	---